

빈곤층 권익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

『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』와 『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』 및 『재단법인 동천』은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업무협약서는 『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』와 『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』 및 『재단법인 동천』(이하 각 ‘중앙자활센터’, ‘태평양’, ‘동천’이라고 하고, 위 3개 기관을 따로 부를 때는 “협약 당사자”, 함께 부를 때는 “협약 당사자들”이라고 한다)이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본원칙) 협약 당사자들은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
제 3 조 (협력 의무) ‘태평양’과 ‘동천’은 함께 ‘중앙자활센터’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.

1.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자문
2.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
3.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
4.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
5.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

제 4 조 (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) 협약 당사자들은 필요 시 각 협약 당사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5 조 (비밀유지 등)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교류를 통해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 등을 각 기관의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해 관리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제3자에 대한 제공이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.

제 6 조 (수정과 조문해석) 이 협약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,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경우 협약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제 7 조 (기타 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 8 조 (효력발생 등) ① 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,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 기관이 해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어느 한 협약 당사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사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상대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,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13일

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재단법인 동천

원장 심 성 지

대표변호사 노영보

이사장 차 한 성

